서울특별시-의정부시-노원구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 협약 추진 동의안

의 안 번 호	1457

제출년월일 : 2020년 4월 3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와 의정부시, 노원구가 서울 동북권과 경기 북부권의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하여 각 기관 간 업무협조가 필요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및 '장암동 수락리버시티1,2단지 노원구로의 행정구역 변경'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고자 협약을 체결함

나. 본 협약은 행정구역 변경 및 면허시험장 이전사업에 따라 이전 및 행정구역 변경 대상지역인 의정부시에 상생발전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 시의 예산편성 등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조례」제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다. 협의 당사자인 의정부시의 조속한 협약 체결 요청과 이전 예정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시한이 연말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라.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에 해당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55조의3의 단서에 따라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협약 전 보고 및 협약서에 효력발생 시기 조건을 붙여 협약을 선행하였으며,

마.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및 행정구역 변경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해당 협약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조례」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약 개요

○ **목　　적:**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장암동 행정구역 변경 및 상생협력 지원

○ **개요**

1) 도봉운전면허시험장(상계동 807-1 일원) 이전

- 이전위치: 의정부시 장암동 223일원
- 이전면적: 60,500㎡
-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 사업기간: '20.3월 ~ '25. 12월
- 이전사업비: 약 983억원(추정)

2) 행정구역 변경(수락리버시티1,2단지,'19.10월말 기준)

- 대상지: 의정부시 장암동 412일원 약 13.5만㎡(기반시설 포함)
- 세대수: 1,153세대(1단지 680, 2단지 473), 인구수: 3,357명

※ 서울시, 경기도, 의정부시 및 노원구 T/F 구성 후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행정구역 변경 추진

3) 의정부시에 대한 상생협력 지원

- 호원복합체육시설 건립 지원(노원구와 공동이행)
- 의정부시 장암역 환승 주차장 개발 지원

○ **그간 추진경과**

- '19.10.31.의정부 시장 면담 (지역발전본부장)
  -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원칙적으로 수용
  - ▸서울시 제안사항 외 주민 및 시의회 설득을 위한 추가 인센티브 필요
- '19.12.13.행정1·2부시장 연석회의 - 의정부시 요청사항 검토
- '20. 2.14. 의정부시장 면담 (지역발전본부장)
  - ▸면허시험장 이전 및 행정구역 변경 등 큰 틀에서 상생협력 필요
- '20. 3. 4. 행정2부시장 보고

- ’20. 3. 6~10. 시의회 보고(의장, 상임위원장)
- ’20. 3.10. 행정1부시장 및 시장 보고
- ’20. 3.13.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 협약 체결(화상 협약)

나. 주요협약내용

○ **협약개요**

- 협 약 자: 서울특별시장, 의정부시장, 노원구청장
- 협약목적: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및 장암동 행정구역 변경을 위해 상호 협력
- 협 약 일: ’20. 3. 13(금) 15:00

○ **협약대상:**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장암동 행정구역 변경 노원구 편입, 의정부시에 상생협력 지원

○ **상생협력 방향**

-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편익 및 면허시험장 이전에 따른 부가가치 고려한 큰 틀에서 상생협력 지원

○ **기관별 역할**

〔서울시〕 본 협약의 상생협력(호원복합체육시설 건립) 지원 노원구와 공동이행 및 의정부시 장암역 환승 주차장 활용 지원

〔의정부시〕 ‘도봉면허시험장’의 장암역 인근 이전 관련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행정업무 지원

〔노원구〕 본 협약의 상생협력(호원복합체육시설 건립) 지원 서울시와 공동이행

○ **협약기간:**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 본 협약 해지 시까지 유효
단,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은 때로부터 효력발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첨부자료: 동반 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 협약서 1부.

※ 작성자 :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기반조성팀 양홍모(☎2133-8287)

붙 임1 **동반 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 협약서**(서울시-의정부시-노원구, 2020.3.13.)

서울특별시 · 의정부시 · 노원구
동반 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라 한다)와 의정부시 · 노원구는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 을 위하여 공동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서울시 · 의정부시 · 노원구가 서울 동북권과 경기 북부권의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 을 위하여 각 기관 간 업무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 범위) 서울시 · 의정부시 · 노원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의정부시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2단지 일대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경기도 의정부시' 에서 '서울시 노원구' 로 변경하여 주민불편 해소
2. 의정부시는 '도봉면허시험장' 의 장암역 인근 이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관련 행정업무 지원
3. 서울시 · 노원구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익을 고려하여 의정부시의 '호원복합체육시설' 건립 지원
4. 서울시는 '장암역 환승주차장' 부지의 매각 등 의정부시의 '장암역 환승주차장' 개발 지원

제3조 (협약 이행) 서울시 · 의정부시 · 노원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제2조 각 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협약의 세부내용 및 이행 절차는 서울시와 의정부시 · 노원구 상호 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서울시 · 의정부시 · 노원구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단, 협약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본 조에 의한 실무협의회 외 별도의 행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관련사업의 세부 시행방안
2. 관련사업 추진 시 이견에 대한 협의·조정
3. 기타 이 협약에서 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기타사항) ① 본 협약은 협약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본 협약과 관련하여 대외발표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가 그 내용, 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한 후에 실시한다.

③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협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약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 (효력) ① 본 협약의 효력은 각 기관이 서명한 날부터 발생한다. 단,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②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나머지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호 협의하여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 협약은 해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존속된다.

서울특별시와 의정부시·노원구는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노 원 구
시 장	시 장	구청장
박 원 순	안 병 용	오 승 록